

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양진영 최종요약서 2차 부동산공시법령(초판기준)

	수정 전	수정 후
p.43 01번 문제 보기 ①번 문장 수정	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	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p.67 26번 문제 보기 ④번 문장 교체	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.	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,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.